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21

발의연월일: 2025. 2. 6.

발 의 자:전진숙·남인순·김선민

박희승 • 허종식 • 이훈기

이정문 · 김남희 · 이연희

권칠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인, 그 밖의 비영리법 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호자나 영유아의 형제·자매가 암 등 중증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 는 경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어린이집의 보육서 비스가 절실하지만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자가 아닌 이유로 어린이 집 입소를 위하여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실정임.

이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

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교육부렁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

7의3. 교육부렁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8조(보육의 우선 제공) ① 국	제28조(보육의 우선 제공) ①		
가나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			
인,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			
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			
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		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
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			
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			
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 기본			
법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			
촉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탁			
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			
인이 설치・운영하는 어린이집			
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			
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			
할 수 있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7의2.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		
	증질환자의 자녀		
<u><신 설></u>	7의3.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		
	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		
	<u>유아</u>		
8. (생략)	8. (현행과 같음)		

②・③ (생 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